

1. 개정이유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우천시 공동구 환기구를 통한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형 덮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지침의 “차수벽” 용어를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사용하는 “물막이판”으로 수정하여 용어를 일치시킴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지침에 명시함(안 제4조제6항)

나. 우천시 공동구 환기구를 통한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구에 방수형 덮개 등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다. 종전의 “차수벽”을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의 용어인 “물막이판”으로 수정하여 용어를 일치시킴(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공동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차수벽”을 “물막이판”으로 한다.

제3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우천시 방수형 덮개 등을 사용하여 환기구를 통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그 밖의 설비) 그 밖에 통
신설비 또는 비상연락설비, 경
보설비, 차수벽 및 환기구 등의
잠금장치 등을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환기구의 보호) ① 격자형
환기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빗
물의 유입이나 유류 등 위해 물
질의 투입을 막을 수 있는 20c
m이상 높이의 유입방지턱과
불연재로 만들어진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행이 빈번하거나 가로수와
가까운 도로에 위치하여 가연성
물질의 투입이 예상되는 환기
구에는 그물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격자형 환기구의 틀은 외부인이
들어 올리지 못하도록 용접 또는
지지철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
법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
정시켜야 한다.

<신 설>

제19조(그 밖의 설비) -----

----- 물막이판 -----

-----.

제37조(환기구의 보호)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우천시 방수형 덮개 등을 사
용하여 환기구를 통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